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
----------	----

제출연월일 2005. 11. 29.

제출자 사천시장

1. 의결주문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우리시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회의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서 지급범위를 정하도록하는 한편, 법제처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띄어 씀(안 제명)

◦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

나. 시 소속직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3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5. 10. 18. ~ 11. 10)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

제3조 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을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명 : <u>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u></p> <p>제3조(수당) <u>시 소속직원이 아닌</u>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명 : <u>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u></p> <p>제3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관계법령발췌

【地方公務員法】

第44條（報酬決定의 原則）①公務員의 報酬는 一般의 標準生計費·民間의 賃金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職務의 困難性 및 責任의 程度에 相應하도록 階級別로 定한다. 다만, 職務의 困難性과 責任의 程度가 현저히 特수하거나 缺員補充이 곤란한 職務에 從事하는 公務員 및 第4條第2項의 研究 또는 特殊技術職列의 公務員의 報酬는 따로 定할 수 있다.

②經歷職公務員 상호간의 報酬 및 經歷職公務員과 特殊經歷職公務員 상호간의 報酬는 均衡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이 法 기타 法令에 의한 報酬에 관한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金錢 또는 有價物도 公務員의 報酬로 지급될 수 없다.

【全文改正 1981.4.20】

第45條（報酬에 관한 規定）①公務員의 報酬에 관한 다음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1. 俸給·號俸 및 昇給에 관한 사항
2. 手當에 관한 사항
3. 報酬의 지급방법, 報酬의 計算 기타 報酬支給에 관한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殊手當과 第7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賞與金의 지급 또는 特別昇給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개정 1999.12.31> 【全文改正 1994.12.22】

第46條（實費補償등）①公務員은 報酬를 받는 외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職務遂行에 所要되는 實費補償을 받을 수 있다.

②公務員은 所屬機關의 長의 許可를 받아 본래의 業務遂行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擔當職務외의 特수한 研究課題를 委託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補償을 지급받을 수 있다.<新設 1981.4.20>